

「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·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·자재·장비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)
- 다. 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
 - 2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 - 3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 건설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·하도급 비율 및 지역 인력·자재·장비의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 건설 경기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의2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공동도급(49% 이상), 전문건설업 하도급(70% 이상), 지역 주민 고용(60% 이상), 지역 자재·장비 사용(70% 이상) 등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명시하여,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 및 공공 발주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.